



금융감독원

# 보도자료



소비자는



보도	2024.1.30.(화) 조간	배포	2024.1.29.(월)	
담당부서	디지털혁신국 검사2팀	책임자	팀장	지행호 (02-3145-7155)
		담당자	선임검사역	황준혁 (02-3145-7158)

## 불법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경보 3차 발령!!

### ■ 소비자경보 2024 - 07호

등급	주의	경고	위험
대상	금융소비자 일반		

## I 배경

-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그간 검사사례를 활용하여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
  - 2차례 금융소비자 경보\*(23.11.16, 12.7.)를 통해 불법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주의사항과 대처요령 등을 안내한 바 있으며, 이어서 세 번째 소비자경보를 발령(24.1.30.)하였음

\* (1차)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시 대응요령 등, (2차) 채무감면 진행시 주의사항 등

### < 3차 소비자경보 주요 안내사항 >

#### ① 채권추심회사가 수입할 수 없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대처요령

- 법원판결·지급명령 등 추심할 수 있는 채권인지 확인한 뒤 권원이 없는 민사채권인 경우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

#### ② 채권추심인이 강제집행을 언급할 경우 대처요령

- 未변제시 강제집행을 진행하겠다는 독촉장을 발송하거나 언급할 경우 법원판결·지급명령 등 강제 집행권원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없는 경우 강제집행 중지를 요청

#### ③ 추심인이 변제금 등을 개인계좌로 입금 요구시 대처요령

- 채무자는 채권추심회사가 발송한 수입사실 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 명의의 계좌로만 변제금을 입금하고 개인계좌로 입금 요구시 즉시 거절

※ 필요시 관련증빙 등을 확보하시어 금융감독원에 신고(민원접수)하시기 바랍니다.

## II 소비자 경보 사항

1

채권추심회사에서 채권추심 수입할 수 없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로부터 ①상사채권\* 및 ②판결/공증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\*\*만 수입할 수 있는 바,

\* 「상법」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으로서 통신요금, 공사대금, 운송료 등이 해당

\*\* 「민사집행법」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금전채권으로서 1)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, 2)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 결정문 또는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채권, 3)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가 있는 채권 등

○ 권원(판결·공증 등)이 없는 민사채권 등 그 외의 채권을 수입하여 추심하는 것은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.

### 「주요 사례」

- 채권자가 추심의뢰하는 채권이 민사채권에 해당하고 판결, 공정증서 등 집행 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부당하게 수입·추심
- 인정된 권원이 없어서 추심할 수 없는 민사채권임에도 채권추심회사에서 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상사채권으로 잘못 판단하여 수입·추심

### < 소비자 유의사항 >

◆ 금융소비자들이 채권추심회사로부터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.

○ 채권추심회사에서 추심하고 있는 채권이 민사채권에 해당하고, 동 채권에는 권원(판결, 공정증서 등)이 없다고 알고 있는 경우\*에는

\* 집행권원(판결·공증 등)은 채무자 통지(판결)나 채무자 동의(공증)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바,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인지 가능

⇒ 채권추심회사를 상대로 권원을 확인하고 “수입할 수 있는 채권(상사채권 및 판결·공증 있는 민사채권)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수입불가 채권을 불법추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(민원접수)하시기 바랍니다.

2

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 중 강제집행 진행을 언급할 경우 채권추심회사를 상대로 강제 집행권원(판결, 공증 등)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□ 강제집행은 집행권원\*을 확보한 이후에야 가능한 사안인 바,

\* 확정 종국판결,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, 확정 지급명령, 가압류·가처분명령, 집행증서 등

○ 집행권원이 없으면서도 채무자를 압박할 목적으로 未변제시 곧바로 압류·경매 등 강제집행 진행을 언급하는 것은 불법 채권추심(채권추심법 제9조1항1호에서 금지하는 '위계' 등)에 해당합니다.

### 「주요 사례」

- 채권추심회사가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 없이 채무자를 압박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안내

### < 소비자 유의사항 >

◆ 금융소비자들이 채권추심회사로부터 허위의 강제집행 통보에 부당한 압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.

○ 채무자 본인이 추심회사가 추심 중인 채권이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이 없다고 알고 있는 경우\*인데도

\* 집행권원(판결·공증 등)은 채무자 통지(판결)나 채무자 동의(공증)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바,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인지 가능

채권추심회사가 未변제시 강제집행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독촉장을 발송하거나 언급할 경우에는

⇒ 채권추심회사를 상대로 판결·지급명령 등 강제 집행권원을 확인하고 없는 경우 강제집행 중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

※ 강제집행을 허위로 통보하는 경우 관련증빙(녹취, 독촉장 등)을 확보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(민원접수)하시기 바랍니다.

### 3

채권추심인이 변제금 등에 대해 현금 또는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 요구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채권추심회사는 변제금을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\*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개인명의 계좌 입금 또는 현금 수령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

\* 채권추심 위임계약 등 채권자와 서면 합의시 채권추심회사의 명의의 계좌로 입금 가능 (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제28조 제1항)

○ 채권추심인이 변제금 등을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여 직접 수령한 이후 횡령사고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채무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#### 「주요 사례」

- △△신용정보의 위임직 채권추심인 ▽▽▽은 추심업무 수행중 채무자의 변제금 1,294만원을 개인계좌로 받아 유용하고, 이후 다른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자금(1,300만원)으로 先변제(1,294만원)한 채무를 後종결 처리하는 등 돌려막기 형식으로 횡령
- ○○신용정보의 위임직 채권추심인이었던 ◇◇◇는 해촉 당시 무단 반출한 위임계약서, 채권원인서류 등을 이용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을 계속하였으며 회수한 변제금(3천만원)에 대한 수수료 6백만원(20%)을 채권자로부터 직접 수취 후 횡령

#### < 소비자 유의사항 >

◆ 금융소비자들은 변제한 채무에 대한 횡령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.

- ① 채무자는 채권추심회사가 발송한 수임사실 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 명의의 계좌로만 변제금을 입금하고
- ② 채권추심인이 개인계좌로 입금 요구시 즉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.

※ 관련증빙(녹취, 문자)을 확보하시어 채권추심회사(대표번호)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(민원접수)하시기 바랍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